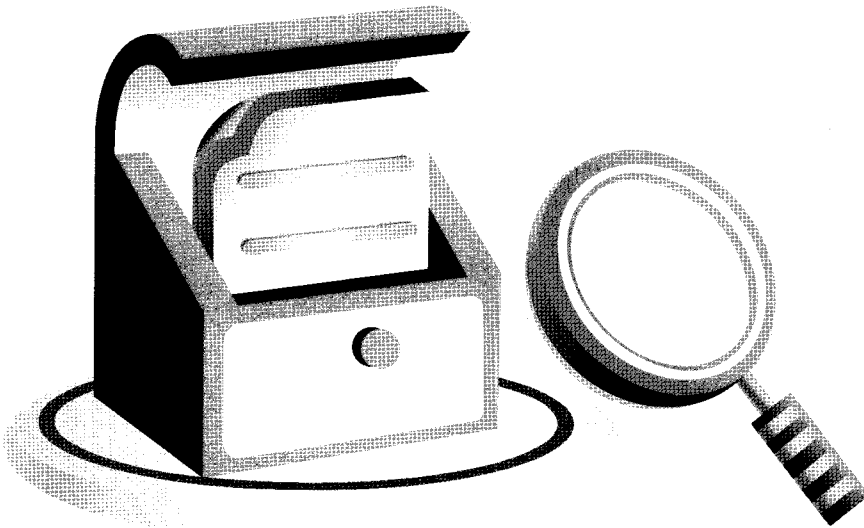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지식경제부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9534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41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변경허가 사항 구체화(안 제6조)
- 가스전용운반차 소유관련 규정 명확화(안 별표 3 및 별표 6)
-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안 별표 22)

지식경제부령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가스설비”를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스설비”를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업휴지 등의 신고)”를 “(사업개시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의 휴지(休止)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지나 폐지”를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 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로, “휴지·폐지신고서”를 “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서”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별표 3 제1호(가목8)바 중 “확보할 것”을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



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 8)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 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벌크로리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해당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 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를 공급할 것

(라)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제4호가목1)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저장능력의 총합”으로 본다)

(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별표3제(호나목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8)사)1)에 따라 운송을 위탁하는 자와 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운송을 위탁하는 자: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와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방법을 준수할 것
[(2)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송을 위탁받은 자

(가)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하는 경우 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것

(나)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을 것

별표3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 아)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및 전시장(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별표 3 제 2호가목6) 중 “5)에서 허용한”을 “5)바)부터 카)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9)로하며, 같은 목에 7) 및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5)나)·다)·바)·사)·차) 및 가)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5)부터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가목5)다)부터 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라)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마)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1) 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기준

가목5)마)(1)에 따라 운송을 위탁하는 자와 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운송을 위탁하는 자: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와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방법을 준수할 것
[나)(1)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송을 위탁받은 자

- (1)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하는 경우 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것
- (2)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을 것

별표 20 제2호다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급설비 중 용기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의 경우 가스공급자는 용기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용기를 시가상당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0 제2호라목1) 중 “철거·수거하되”를 “철거·수거하고, 배관의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표 20 제2호라목4) 중 “용기가스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를 “용기가스소비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신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공급자(이하 “신규공급자”라 한다)가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을 신규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다.

별표 20 제3호가목3)나) 중 “철거하여야 한다.”를 “철거하고, 배관 막음 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4호가목의 교육기간 등란 중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 환경변화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를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로 한다.

별표 23 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별표 2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다만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용기가스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23 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발생한 경우 나목의 할증률에”를 “발생한 경우”로, “할증률을 더하여”를 “할증률을”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중 보고받는 자란을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보고받는 자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별표 24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4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판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1호가목9)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거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22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중 별표 3 제1호가목8)바) 및 사)와 별표 3 제3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판매시설 중 별표 6 제1호가목5)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입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2호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는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변경허가 사항) 법 제3조제3항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변경허가 사항)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저장설비나 <u>가스설비</u> 의 위치 변경	4. -----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 · 충전설비 · 기화장치 또는 로딩 압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용량 증가나 <u>가스설비</u> 의 수량 증가	6. ----- ----- 가스설비 중 압력용 기 · 충전설비 · 기화장치 ·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u>사용의 휴지(休止)</u> 또는 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지나 폐지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 ----- 사용을 개 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 개 시 · 중 단 · 폐 지 · 재 개 신고 서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2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p> <p>가. (생략)</p> <p>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p> <p>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p> <p>2)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p> <p>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p> <p>4) 삭제</p> <p>5)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p> <p>②·③ (생략)</p> <p>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p>	<p>제52조(보험가입 등) ① _____</p> <p>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p> <p>_____</p> <p>_____</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p> <p>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p> <p>2) 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p> <p>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p> <p>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5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p>